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地方自治法 제130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條例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公共施設의 使用料를 결정하고 조정시에는 條例改正을 통하여 징수·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민의 의무부담을 지우는 事案에 대해서는 立法豫告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는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는 現行 條例上에 動議案 形式으로 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서 민주적 절차인 立法豫告 절차가 무시되고 생략되는 등 시민의 의견수렴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本 改正條例案을 통하여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 금액 및 조정 결정사항을 條例에 직접 규정하고 명문화시킴으로써 시민의 의무부담을 수반하는 事案에 대하여 민주적 절차로 정해진 立法豫告를 통한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부적합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本 改正條例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용료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議會의 議決을 얻어 市長이 고시하도록 하였던 것을 이를 개선하여 條例에 사용료를 직접 규정하고, 둘째, 사용료 감면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셋째,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넷째, 사용료징수·과태료징수·이의신청절차 등에 대하여는 地方自治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先輩·同僚委員 여러분, 조금이라도 시민의 편익이 증진되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本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은 本 改正條例案으로 대체하고 폐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德華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제3차 회의에서 執行部가 올린 동의안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이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혹시라도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관계상 시간을 좀 아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鄭炳權議員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議案番號 제705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은 本 改正條例案으로 대체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鄭炳權議員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서울特別市長이 제출한 議案番號 제705호인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은 本 改正條例案으로 대체하고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사용료 등) ①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에 규정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공익을 위한 행사
3. 장애인·국가유공자·65세 이상 노인 등 특히 사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제2항의 사용료 감면 범위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사용료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제1항·제4항에 규정된 사용료·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⑥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시설 운영의 위탁을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 사용료

가. 체육시설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축 구 장 야 구 장	면당 1회 2시간이내, 단독독점 사용시	4,000원
배 구 장 농 구 장	면당 1회 2시간이내, 단체독점 사용시	1,500원
배드민턴장	면당 1회 2시간이내, 단체독점 사용시	600원
정 구 장	면당 1회 2시간이내	1,000원
수 영 장 (국민체육진흥기금포함)	어린이(만4~12세)	800원
	청소년(만13세~18세)	1,300원
	성 인(만19세 이상)	1,700원
빙 상 장	어린이(만4~12세)	800원
	청소년(만13세~18세)	1,100원
	성 인(만19세 이상)	1,500원
롤러스케이트장	어린이(만4~12세)	500원
	청소년(만13세~18세)	600원
	성 인(만19세 이상)	700원

나. 주차시설

구 분	기 분 및 사 용 료			
위 치	1회주차(1구획)		1일 주차	월 정기권
	최초 30분	초과 15분		
여의도지구	1,100원	500원	12,100원	140,000원
기타지구	1회 2,000원(24시간이내)			
○공 유 일 : 무료 ○사용료 징수시기, 징수시간 및 기타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정한다.				

다. 기타시설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영화촬영	주간 1회당(야간은 주간의 2배)	65,000원
녹 화	1시간당	13,000원
	초과시간당	6,5000원
낚 시 터	낚시대 1대 1일	1,000원
	1대 초과당 1일	500원
거북선관람	어린이(1회)	200원
	청소년(1회)	500원
	성 인(1회)	700원
잔디발행사	100명 이상 독점 모임행사시 2시간 기준 1㎡	10원

○委員長 宋德華 이상으로써 제92회 臨時會 제4차 水資源管理委員會를 마치고 散會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0時 23分 散會)

○出席委員

宋 德 華　尹 鍾 一　李 建 行
金 天 柱　李 善 宰　鄭 炳 權
崔 鍾 德　朴 南 植

○專門委員

金 泰 鎬